

광주고등법원 2022. 4. 27 선고 2021나223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선

피고, 항소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크로

담당변호사 박동민

변 론 종 결 2022. 3. 30.

판 결 선 고 2022. 4. 27.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6. 3. 선고 2019가합1098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F 사이에 2015. 7. 16.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3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원고 C에게 147,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쪽 10행의 “공소사실” 다음에 “(원고들의 위 투자금이 F의 원고들에 대한 편취 금원에 포함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하6행의 “발행주식 40,000”을 “발행주식총수 40,000”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하1행, 4쪽 3행의 “발행주식”을 “발행주식총수”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F은 같은 날 Q에게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G의 주식 지분 11%(6,600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Q은 위 약정에 따라 G의 주식 지분 11%(6,600주)를 양도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

○ 제1심판결 4쪽 4, 5행의 [인정근거]에 “을 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쪽 하9행의 “될 수 있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들의 위 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F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쪽 하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하1행 내지 6쪽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제1심 법원의 반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을 5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G의 발행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객관적인 시장가격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G 발행주식 1주의 평가액은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을 56호증)에 의하더라도 11,584원이고,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15%를 가산하더라도 그 평가액이 13,321원에 불과한 점, ③ F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G의 발행주식 22,000주를 1주당 90,909원(= 2,000,000,000원 ÷ 22,000주, 원 미만 버림)에 매수한 점,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산정한 위 평가액 등을 고려하면, F이 G의 경영권을 함께 매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F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F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6쪽 5행 내지 8쪽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이 G의 실제 주식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등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 당심 증인 F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이고, 당심 증인 Q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제3자일 뿐만 아니라 F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G의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으로서 F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당심 증인 F, Q의 증언 포함)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8쪽 10행의 “310,000,000원의 범위” 다음에 “(원고 A는 100,000,000원의 범위, 원고 B는 13,000,000원의 범위, 원고 C는 147,000,000원의 범위, 원고 D은 50,000,000원의 범위)”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8쪽 10행의 “구할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주1)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후 2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에 체결되었고, 이들 계약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은 마지막으로 체결된 2019. 1. 28.자 변경계약이고 이 사건 계약은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의 2022. 4. 20.자 참고서면 참조).

그러나 ① F은 이 사건 계약으로 G의 주식 및 경영권을 매매대금 2,0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변경계약이 아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400,000,000원을 실제 지급한 점, ② 2018. 11. 21.자 변경계약 및 2019. 1. 28.자 변경계약은 F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기지급한 400,000,000원으로 감액하면서 그 매매대금에 맞춰 매매 대상인 주식의 수량을 조정하고 매매 대상에서 경영권을 제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과 위 각 변경계약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약과 위 각 변경계약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각 변경계약은 이 사건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이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위 각 변경계약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8쪽 하3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F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4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각 취소 대상이 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8쪽 하1행, 9쪽 1행의 “피고 B”을 “원고 B”으로, “피고 C”를 “원고 C”로, “피고 D”을 “원고 D”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쪽 3 내지 8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들은,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 박성남, 판사 김준영